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124
----------	-------

발의연월일 : 2023. 12. 29.

발 의 자 : 윤미향 · 송옥주 · 신정훈
허영 · 김의겸 · 전용기
김남국 · 김두관 · 김승남
강성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 현행법에 따른 임금체불보증보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인식 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올해 12월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0명 중 7명은 임금체불보증보험 등 임금체불 구제절차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사용자의 부당한 이의제기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 또는 보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 등에 대한 사업주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

금체불보증보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승인 등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 절차 규정을 정비하여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제23조 제2항·제3항 신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설명의무 등) ① 제8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고용허가를 한 직업안정기관(제27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체류자격, 취업활동기간 등 외국인근로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임금(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공제여부를 포함한다), 숙소사 제공여부(「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포함한다)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 상담 및 피해구제기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 준수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8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고용허가를 한 직업안정기관 및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에게 임금채불을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도의 신청 또는 가입방법 및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2.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설명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지급 등”을 “지급과 보증보험의 정당한 지급거절 및 보류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임금채불을 이유로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사실확인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지급보류를 야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급거절 및 지급보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지급보류를 야기하는 행위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2(설명의무 등) ① 제8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고용허가를 한 직업안정기관(제27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u> <u>1. 체류자격, 취업활동기간 등 외국인근로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u> <u>2. 근로시간, 임금(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공제여부를 포함한다), 기숙사 제공여부(「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준 충족여부를 포함한다)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u> <u>3. 외국인근로자 상담 및 피해 구제기관에 관한 사항</u> <u>4. 외국인근로자 준수 의무에</u>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 (생략) <신설>	<u>관한 사항</u> 5. 그 밖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8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고용허가를 한 직업안정기관 및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도의 신청 또는 가입방법 및 절차를 외국인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2.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설명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
---	--

<신 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
· 내용 · 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사실 확인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지급보류를 야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급거절 및 지급보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지
급과 보증보험의 정당한 지급
거절 및 보류 등-----
-----.

제32조(과태료) ① -----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 8. (생략) <u><신설></u> 9. · 10. (생략) ② (생략)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9조의2제1항 ·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u> 2. ~ 8. (현행과 같음) <u>8의2.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지급보류를 야기하는 행위</u>를 한 자 9.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